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8. 22 선고 2014가합533840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기술신용보증기금

피고1. 주식회사 A

특별대리인 B

2. C

3. D

변론 종결2014. 8. 22.

판결 선고2014. 8. 22.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846,519,724원 및 그 중 846,519,138원에 대하여,

나. 피고 C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410,213,444원 및 그 중 410,212,858원에 대하여,

각 2014. 1. 24.부터 2014. 8. 20.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망 E과 피고 D 사이에 2013. 8. 9.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D는 피고 F, G, H, I, J, K, L, M, N, O에게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13. 8. 9. 접수 제3568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과 사이에 2007. 2. 2. 및 2012. 9. 17.에 보증원금을 각 400,000,00원, 425,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으로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이하 순차로 1, 2 신용보증이라 한다 합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이라 한다)하였고 피고 A은 위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우리은행에서 각 5억원씩을 대출받았다.

(2) 한편, 피고 C은 2 신용보증과 관련하여 피고 A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각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신용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1) 피고 A은 우리은행으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받은 후 2013. 11. 18. 기한이익상실로 신용보증사고를 유발하여 원고는 2014.1.24.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합계 847,352,855원(1 신용보증 관련 411,046,575원 + 2 신용보증 관련 436,306,28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2014. 1. 24. 816,072원 등 3차례에 걸쳐 합계 833,717원을 회수하여 현재 미회수 대위변제금 846,519,138원(1 신용보증 관련 410,212,858원 + 2 신용보증 관련

436,306,280원)이 남아 있다.

(3)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지연손해금 약정이율은 연 12%이며, 1 신용보증과 관련하여 일부 회수된 대위변제금한 확정 지연손해금은 586원이다.

다. E의 근저당권설정

E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2013. 8. 9. 피고 D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접수 제35687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라. 상속관계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12. 15. 사망하였고 직계비속 및 자녀, 배우자, 형제들이 2014. 4.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느단241호로 각 망 E의 재산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차순위 상속인인 피고 F, G, H, I, J, K, L, M, N, O가 망인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주식회사 A, C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A은 846,519,724원(410,212,858원 + 436,306,280원 + 586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846,519,138원에 대하여, 피고 C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410,213,444원(410,212,858원 + 586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410,212,858원에 대하여 각 대위변제일인 2014. 1.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인 2014. 8. 20.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D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고 장래 원고의 구상금 채권 발생이 예상됨에도 특정 채권자를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 및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D는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주문 제2의

나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재판장판사이성구

판사최연미

판사정경환

별지